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--

# 검 토 보 고 서



행 정 문 화 위 원 회  
수석전문위원 한 철 우

#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회부경위

본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2월 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2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 2. 제안이유

- 「지방공무원법」 개정에 따른 직종개편과 관련하여, 위임된 전보권 및 임용권 관련 변경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## 3. 주요내용

-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 정비
  - 일반직공무원 임용권 범위 명시를 위한 단서 신설
  - ‘기능직공무원’ 삭제, ‘계약직공무원’ → ‘임기제공무원’ 명칭변경
- 직속기관, 사업소장 및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전보권 정비
  - ‘기능직공무원’ 삭제 : 12건
-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 정비
  - ‘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’ → ‘임기제공무원’

#### 4. 검토의견

- 본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지방공무원법」 개정에 따른 직종개편과 관련하여,
  - 의회사무처장,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과 직속기관, 사업소장 및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전보권을 정비하는 것임.
  - 내용으로는 「지방공무원법」 개정에 따라 ‘기능직공무원’을 삭제하고, ‘계약직공무원’을 ‘임기제공무원’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임.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「지방공무원법」의 개정에 맞게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붙임 : 1.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